



税務
法人

三友 SNTA

■ (Yeouido-dong, Shinsong Bldg.)

No.902, 67 Yeouinaru-ro, Yeongdeungpo-gu
Seoul, 07327, Korea

■ TEL : +82-2-3215-1300

■ FAX : +82-2-761-6640

문서번호: SNTA1601-001

수 신: 각회원사 담당자

발 신: 세무법인 삼우 SNTA

주민세 종업원분 개정사항 안내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2015 년 12 월 29 일 개정 공포되어 2016 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세 종업원분 관련 지방세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민세 종업원분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폐사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내용

종전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과세함에 있어서 사업소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종업원 수가 50 인이하(면세점)의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면세점이 종업원수 기준에서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으로 변경되어, 최근 1 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35,000,000 원(=270 만원 x 50)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 지방세법 제 84 조의 4 등>

종전	개정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 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 아니함.	최근 1 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70 만원)에 50 을 곱한 금액(135,000,000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함.

2. 개정이유

종전에는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에 상관없이 종업원 수 50 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수준이 낮은 사업소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135,000,000 원)을 기준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하기 위하여 면세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시행시기

2016 년 1 월 1 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금번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에 대한 개정규정이 201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16 년 1 월분의 급여지급 시에 하기의 주민세 종업원분의 개요를 설명한 참고자료를 검토하시어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라오며, 만약 면세점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익월 10 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참고: 주민세 종업원분의 개요>

1. 납세의무자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합니다. “사업주”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사업소(매년 7 월 1 일 현재 1 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를 둔 자를 말하고, “종업원”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국외근무자는 제외)을 말합니다.

2. 납세지

주민세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합니다.

3.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 제 1 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12 조 제 3 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합니다.

2) 세율

주민세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 천분의 5(0.5%)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 분의 50 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표준세율과 달리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입니다.**

4. 징수방법

1) 면세점(지방세법 제 84 조의 4 등).

납세의무성립일(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 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35,000,000 원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급여를 지급하는 달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 개월간(사업기간이 12 개월미만인 경우에는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경우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 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2)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지방세법 제 84 조의 5 등)

중소기업의 고용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 명을 초과하

는 경우만 해당함)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 표준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 명 이하인 경우에는 50 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합니다.

$$* \text{공제액} = (\text{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text{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times \text{월 적용급여액}$$

이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달부터 1 년간만 50 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직전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수로 봅니다.

- ①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 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 ② 해당 월의 1 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 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 명을 초과하는 경우(신고하는 달부터 과거 5 년 내에 종업원 수가 1 회 이상 50 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1) 월 적용급여액 산정

월 적용급여액은 신고한 달의 종업원 급여총액을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수로 봅니다.

(2) 종업원 수의 산정

종업원수의 산정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text{월 통상인원} = \text{해당 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 수} + (\text{해당 월의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 / \text{해당 월의 일수})$$

3) 신고납부

주민세 종업원분은 자진 신고납부방법으로 하며,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 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